

●서울지방항공청공고 제2025-48호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확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1. 공고사유: 과태료 확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2025.2.20. ~ 2025.3.4. (16일간)
-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고지서 납부번호	사유	금액
1	석*수	1976.12.2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14번길 41-13, 201호	항공안전법 제 127조제3항 위반	과태료 150만원
			01-95-2402-1869-0000-363		

-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
-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8. 가산금 및 증가산금 안내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의 증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되며, 가산금 3%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를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또는 사업자명)	연락처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처분내용	과태료 금액
	과태료 통지 받은 날(우편물 수령일)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	--

귀 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법공청장 귀하

끝.